

# 군 정 질 문 답 변 서

소 속	평 창 군 의 회	질문위원	박종욱 위원	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 기술지원과장)	일 자	질의	2015년 5월 13일
			답변	2015년 5월 13일
회 의	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			

## 질문요지

- 귀농 정착지원금
  - 지원요건 및 기준, 대상 등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답변내용

- 박종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 귀농 정착지원금에 대한 지원기준 및 요건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## 지원 개요

- 정착지원금 지급 : 2년간(24개월) 매월 정액 지급(총 14,400천원)
  - 1년차(선정일~12개월) 월 800천원, 2년차(13월~24월) 월 400천원
- 사용 용도 :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초 생활비로 사용

## 지원 요건

-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분야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정착하는 사람(귀농인)

※ 부모의 농업경영 보조가 아닌 독립된 농업경영체(세대주)를 뜻함.

- 아래 요건 충족자 : ① ~ ⑤ 모두 충족 하여야 함

- ① 이주기한 :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귀농(전입)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,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
- ② 연 령 :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귀농인
- ③ 세대 구성원수 :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
- ④ 교육이수 실적 : 중앙 및 지자체에서 인증하는 귀농·영농교육 등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

## □ 선정 절차

○ 선정평가 기준 : 귀농 정착의욕 등 10개 항목(100점 만점)

※ 붙임참조

○ 평가점수를 최소 60점 이상 획득한 사람중 최고 득점 순위로 결정

※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 지원

○ 평가(심의) 기관 : 농업기술센터 자체 심의 후 강원도 승인

##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 기준표

평가항목	배 점				평가기준
	A	B	C	D	
① 지원신청자 연령 (10점)	10	8	6	4	A : 40~45세, B : 35~39세, C : 30~34세, D : 20~29세
② 귀농 인원수 (5점)	5	4	3	2	A : 이주 가족인원 5명 이상, B : 이주 가족인원 4명, C : 이주 가족인원 3명, D : 이주 가족인원 2명 ※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확인
③ 농업, 귀농·귀촌 관련 교육이수 실적(5점)	5	4	3	2	A : 100시간 이상, B : 80~99시간 C : 51~79시간, D : 50시간 이하 ※ 제출 증빙자료로 확인
④ 귀농 기간(10점)	10	6	4	2	A :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~ 2년 미만 B : 전입일 기준 7개월 이상 1년 미만 C :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D : 전입일 기준 3개월 미만 ※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
⑤ 전입 전 거주지 (10점)	10	6	4		A : 타 시·도의 시지역 거주 후 전입(귀농지역 연고 무) B : 도내 타 시지역 거주 후 전입(귀농지역 연고 무) C : 타 시·도의 시지역 또는 도내 타 시지역 거주 후 귀농 지역과 연고 있는 자의 전입 (출향자, 부모 농어업 종사 등) ※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확인
⑥ 세대 월소득 및 재산규모 (10점)	10	6	4	2	A : 세대 월소득 50만원 미만 또는 재산규모 1억원 미만 B : 세대 월소득 50~100만원 미만 또는 재산규모 1~5억원 미만 C : 세대 월소득 100~150만원 미만 또는 재산규모 5~10억원 미만 D : 세대 월소득 150만원 이상 또는 재산규모 10억원 이상 ※ 신청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사본 및 세대원별 소득·과세 증명원 등으로 확인
⑦ 영농규모 (5점)	5	4	3	2	A : 경작면적 1.0~1.5ha미만, B : 경작면적 0.5~1.0ha미만 C : 경작면적 0.3~0.5ha미만, D : 경작면적 1.5ha이상 ※ 위의 경작면적은 노지재배 기준이며, 임차농지를 포함, 신청서 및 현지 확인서 등으로 확인 ※ 시설농 및 축산농, 특용작물, 산채, 어업 등의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영농규모는 소득 등을 감안 위 규모에 적합하게 심의회에서 적의 결정
⑧ 귀농정착 의욕 (20점)	20	15	10	5	A : 귀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: 귀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: 귀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: 귀농정착 의욕이 보통 이하인 자 ※ 신청서와 사업계획서, 현지조사서 등을 토대로 평가 - 임차토지가 0.5ha 이상인 경우 우대
⑨ 사업계획의 적정성 (10점)	10	8	6	4	A : 매우 우수, B : 우수 C : 보통, D : 미흡 ※ 신청서와 사업계획서, 현지조사서 등을 토대로 평가
⑩ 세대주 및 부부, 자격증 소지자 등 가정사항(15점)  ※ ㉠㉡㉢ 항목을 병급하여 최대 15점까지 가점부여	㉠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 : 5점(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) ㉡ 부부가 함께 귀농한 경우 : 5점(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) ㉢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, 2개 이상은 4점, 1개는 2점의 가점 부여 - 농업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- 친환경농산물 인증자 - 농산업 인턴 참여자(3개월 이상) - 농대 영농정착과정 이수자 -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- GAP 인증을 받은 경우 - 귀농인 농업창업 또는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자				